

	<h2 style="margin: 0;">조기 졸업 운영에 관한 규칙</h2>	규정번호	3-3-12
		제정일자	2004.03.01
		개정일자	2011.05.13
		개정번호	Ver.2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칙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기졸업이라 함은 수업년한이 3년인 학과(전공) 학생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에게 5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제한) ① 조기졸업은 학칙 제42조 제1항의 졸업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업년한을 1학기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1. 편입학 및 재입학자 또는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5학기간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조기 졸업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신청 자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3학년 1학기 초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년한이 3년인 학과 또는 전공에 재학중인 학생 중 2학년 2학기까지 총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을 합산하여 120학점 이상인 자
2. 3학년 1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대상자 선발) 조기졸업대상자 선발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최종 선발한다.

제6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① 조기졸업사정은 당해년도 일반 학생과 포함하여 사정한다.

② 조기졸업신청자가 학칙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년한) 제2항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7조(학위 미취득 조기졸업신청자의 등록) 조기졸업 사정에서 탈락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3) **(조기 졸업 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조기졸업자는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